

TaxFlash



Tax Amnesty 2016

2016 년 6 월 28 일 마침내 조세사면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제정일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사면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해당 정책은 유출된 부의 상환을 통하여 경제 성장 및 분배의 가속화, 증가된 세원을 통한 보다 공정한 세제 개혁 그리고 국가의 개발 자금에 필요한 세원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세사면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efinition 정의

조세사면제도는 유출된 부의 상환에 대하여 관련 세금, 행정 벌과금, 조세관련 형사처벌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해당 규정은 조세사면제도에 의한 자산 신고서(*Surat Pernyataan Harta untuk Pengampunan Pajak/SPHPP*)를 통해 신고되는 자산에 대하여 최근의 과세연도(2015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까지 납세 의무자가 완납하지 않은 세부담에 적용된다.

Eligibility 자격 요건

모든 납세자는 조세사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 분야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형사 처벌이 진행 중인 경우는 예외이다.

Scope of the undeclared assets 미신고소득의 범위

조세사면제도는 SPHPP 에 신고된 인도네시아 국내외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에 적용된다. 부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채의 원금에 해당한다.

SPHPP 에 신고되는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Net Assets	Value to be used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된 순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루피아 금액 USD 로 기장한 경우 - 최종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적용한 재무부 환율로 환산한 루피아 금액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자산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성 자산의 원금과 비현금성 자산의 가장 최종 과세연도말 공정가치의 루피아 금액 외화 자산부채 - 최종 과세연도말 재무부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현금성 자산의 원금과 비현금성 자산의 공정가치 루피아 금액

* 최종 과세연도:

- 2015 년 - 과세연도가 2015 년 7 월 1 일 - 12 월 31 일인 경우
- 2014 년 - 과세연도가 2015 년 1 월 1 일 - 6 월 30 일인 경우

Redemption Money rates and imposition base 보석금 및 부과 기준

일반 납세의무자	SPHPP 제출 시기에 따른 보석금 부과율		
	2016 년 7-9 월	2016 년 10-12 월	2017 년 1-3 월
해외 자산을 신고하되 인도네시아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4%	6%	10%
해외 자산을 신고하고 인도네시아로 상환하여 최소 3 년간 재투자되는 국외 자산	2%	3%	5%
국내 자산을 신고하고 최소 3 년간 투자하는 경우	2%	3%	5%

2015 년 총 소득이 48 억 루피아 이하인 납세 의무자

신고 자산의 100 억 루피아 이하	0.5%
신고 자산의 100 억 루피아 초과분	2%

상기 적용 보석금 부과율은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순자산금액에 적용된다.

상환시 보석금액 계산시 사용되는 부채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법인 납세자의 경우 추가로 신고하는 자산 가치의 75%
- 개인 납세자의 경우 추가로 신고하는 자산 가치의 50%

Procedures 절차

Requirements 요구사항

조세사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번호가 있어야 함(*Nomor Pokok Wajib Pajak*).
- 보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모든 미납 세금을 완납하여야 함(*Tunggakan Pajak*).
- 현재 세무조사나 범칙 조사에서 확인된 미납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미납 세금 또는 과다 환급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최종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하여야 함.
- 납세자의 세무와 관련한 다음의 법적 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 Overpayment 환급
 - 세액 확정 통지서 및 징수 결정서에 대하여 가산세 및 본세 감면 또는 취소 신청
 - 경정청구
 - 조세 불복(Tax Objection)
 - 세액 확정 통지서 및 징수 결정서에 대한 수정청구
 - 조세 소송(Tax Appeal)
 - 행정 소송(Tax Lawsuit)
 - 대법원 상고(Judicial Review)

해외 자산을 인도네시아로 상환하는 납세자는 시기에 따라 다음을 납부하여야 한다.

-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 2% 또는 3%를 적용한 보석금
- 2017 년 3 월 31 일까지 - 5%를 적용한 보석금

국내 자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조세사면제도 승인(Surat Keterangan Pengampunan Pajak/ SKPP)을 받은 시점부터 3년간 해당 자산을 해외로 송부할 수 없다.

자산 신고서(SPHPP)는 납세자의 납세자번호, 자산, 부채, 순자산금액, 보석금 계산과 다음을 첨부하여야 한다.

- a) 보석금 납부 영수증 (Surat Setoran Pajak 양식)
- b) 체납자의 경우 체납 세액 완납 증빙
- c) 소유권에 대한 증빙(소재지, 취득연도, 소유증빙 일련번호)이 포함된 자산 리스트
- d) 증빙 서류가 포함된 부채 리스트
- e) 진행 중인 세무 조사나 범칙 조사에서 확인된 미납 세금이나 과다 환급신청 세金的 납부 증빙
- f) 최종 소득세 신고서 사본
- g) 모든 법적 절차를 철회한다는 확약서
- h) 해외 자산을 상환하는 경우 - 해당 자산을 인도네시아에 3년간 투자한다는 확약서
- i) 국내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 SKPP 발행 이후 3년간 해당 자산을 해외로 송부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 j) 최종 과세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 총소득금액에 대한 확약서

Submission and approval process 제출과 승인 절차

제출 전 납세자는 국세청이나 재무부 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별도의 기관에 신고서(SPHPP)에 첨부되는 서류의 구비와 작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추가로 납세자는 보석금을 납부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납세자는 서명된(개인, 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른 최고 경영진, 또는 경영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SPHPP를 등록된 세무서 또는 재무부 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한다.

조세사면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세사면 승인서 발급 전까지 신고서의 접수 증빙으로 수령증을 발급한다.

- a) 과세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위한 초동 증거 조사, 범칙 수사를 할 수 없음.
- b) 진행 중인 조사는 중단되며, 재무부 장관에 의하여 조세사면 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는 종료됨.

재무부 장관 또는 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자는 조세사면 승인서(Surat Keterangan Pengampunan Pajak / SKPP)를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세사면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Subsequent Declarations, Revision of the Tax Amnesty Approval and Refund

후속 신고, 조세사면 승인 및 환급의 수정

납세자는 해당 기간까지(즉, 2017년 3월 31일까지) 최대 3회 후속적인 조세사면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차 신고서와 3차 신고서상 보석금 부과금액은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 상 부과금액이 고려하여 계산된다.

재무부 장관은 승인서에 오타나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 승인서를 수정할 수 있다. 후속 신고서나 승인서의 수정으로 인하여 보석금이 과다 납부되었다고 결정된 경우, 보석금은 해당 과다 납부금은 수정 승인서가 발행된 날 또는 2 차, 3 차 신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최장 3 개월 이내에 환급되거나 다른 납부세액에 충당된다.

Incentives 혜택

Main incentives 주요 혜택

조세사면제도의 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다음의 혜택이 있다:

- a)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의 모든 납세 의무에 대하여 세액 확정 통지서가 발행되지 않은 미납세액, 가산세, 조세분야 형사처벌 면제
- b)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의 이자, 벌금 형태의 행정적 제재 면제
- c)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의 모든 납세 의무에 대하여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위한 초동 증거 조사, 범칙 수사 면제
- d)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의 모든 납세 의무에 대하여 이미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위한 초동 증거 조사, 범칙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중단

Other incentives 기타 혜택

- a) 조세사면 승인서에 기재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주식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권리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납세의무자 명의로 명의 이전(개서)하여야 함. 다음의 경우 권리 이전으로 인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 권리 이전 신청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된 경우
 - 권리 이전이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동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라는 것을 공증인에 의해 증명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b) SPHPP에 포함된 자료와 정보는 납세자의 조세사범 조사(penyelidikan), 범칙 조사(penyidikan) 또는 검찰 기소(penuntutan)에 사용될 수 없다.

Restrictions 제한 사항

조세사면제도를 신청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다:

- a) 최종사업연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
- b) 최종과세기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다 납부세액(소득세, 부가세, 사치세)을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
- c) 최종과세기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다 납부세액(소득세, 부가세, 사치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음.
- d) 동 법 공포 이후로 최종과세기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부가세, 사치세의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Tax Assessments and Decision letters 세무조사 및 결정서

해당 항목의 세무 조사와 결정서는 최종 과세기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다음 문서(결정문)를 포함한다:

- a) 세액확정통지서
- b) 조기환급 통지서
- c) 수정결정서
- d) 세액확정 감액 결정서
- e) 세액확정 취소결정서
- f) 이의신청 결정서
- g) 조세소송 판결문
- h) 행정소송 판결문
- i) 대법원 재심 판결문

SPHPP(조세사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최종 결정이 발급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체납처분을 하거나 과다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 납세의무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는 것,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세액을 이월 공제하는 것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조세사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과다납부세액 이월 공제, 조세 환급 또는 국세청장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세청은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Assets repatriation and Investment 부의 상환과 투자

해외 자산의 인도네시아로의 상환과 투자에 대한 기한은 다음과 같음:

- a) 2% 또는 3% 보석금을 납부하는 추가 신고 재산: 2016년 12월 31일 까지
- b) 5% 보석금을 납부하는 추가 신고 재산: 2017년 3월 31일 까지

재무부가 지정한 은행을 통한 투자는 인도네시아 역내로 반입된 날부터 최소 3년 이상의 투자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투자는 다음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 a) 인도네시아 국채
- b) 국영기업(SoEs)의 회사채
- c)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채권
- d) 재무부 지정 은행에의 금융 투자
- e) 금융감독위원회(OJK)에 의해 거래가 감독되는 민간회사의 회사채
- f) 정부와 민간 협력사업 방식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 g) 재무부 결정에 따른 정부 우선 순위 실물 부문에의 투자
- h) 그 이외 관련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형태의 투자

납세자는 재무부에 다음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a) 해외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역내로 반입할 추가 재산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실현 방법
- b) 자산을 국외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 역내에 소재하는 추가 신고 자산의 소재

납세자가 다음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재무부는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동 경고장에 대하여 발송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 a) 해외 자산의 상환과 투자가 기한 내에 실행되지 않은 경우,
- b) 국내 재산을 최소 3 년 동안 인도네시아 역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의 회신 의견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산의 상환, 투자, 유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가 적용된다:

- a) 조세사면 신고서에 포함된 추가 자산의 순 자산가액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2016 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가산세를 부과
- b) 기 납부한 보석금은 소득세 계산 시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
- c) 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동 법 11 조에 언급된 조세사면의 혜택은 계속 유효함

Post filing bookkeeping 추후 회계처리

Recording of assets 자산의 계상

조세사면제도 승인을 받아 보석금을 납부한 순 자산금액에 대하여 기장 의무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Amortisation and depreciation 감모 및 감가상각

조세사면 신고서에 기재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은 세무적인 목적을 위하여 감모/감가 상각할 수 없음

Undisclosed Assets 미신고 소득

납세의무자가 조세사면 승인서를 수령한 이후에 SPHPP 에 미기재 또는 과소 기재된 자산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이 발견된 시점에 획득한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고 과소 납부 세액의 200%를 과태료로 부과함.

납세의무자가 SPHPP 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198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취득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이 발견된 시점에 획득한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Lawsuit 소송

해당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든 분쟁은 조세법원에서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

조세사면제도를 통해 제출된 자료와 정보는국세청의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DB)로만 사용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관련 납세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해당 자료를 다른 집단에 공유할 수 없다.

Implementing regulation 규정의 시행

조세사면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한 규정, 즉 투자가 지정된 은행, 구체적인 투자 절차, 보고 절차 그리고 해당 규정을 담당할 부처 등은 추후에 별도의 장관령으로 제정될 것이다.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남승수 회계사 (seungsu.nam@id.pwc.com)

박승찬 회계사 (park.seungchan@id.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Anthony J. Anderson

anthony.j.anderson@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Felix MacDonogh

felix.macdonogh@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Ivan Budiarnawan

ivan.budiarnawan@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maria.purwaningsih@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6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